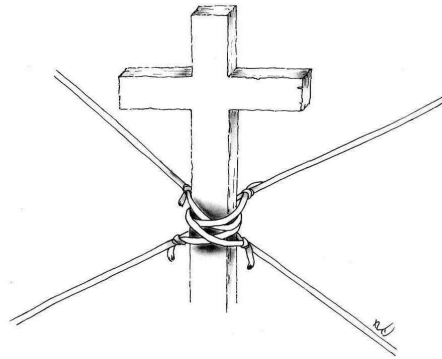


교단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교단선거법 개정안 소개 -



목 차

-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소개 02
- ✓ 교단선거법 개정안 04
- ✓ 교단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조성돈 교수 11
- ✓ 교단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 이상민 변호사 15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www.cemk.org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소개

◎ 개정 취지

그동안 한국교회의 교단 및 교계단체의 선거는 불법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감리교 감독선거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에 각 교단 및 교계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정화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제비뽑기 도입 등 임원선출 방식만 손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선출방식의 미흡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단선거법에 불법선거를 규정하는 조항 및 처벌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각 교단의 선거규칙을 분석한 결과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의 징벌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는 사회선거법이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제정 및 2004년 대대적인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불법 금권선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처벌규정도 강화한 것과 명백히 대비되는 것입니다.

각 교단별 선거규칙 비교

	불법선거금지 관련 조항													처벌 관련 조항			
	금품수수	접대행위	기부행위	상대비방	유인물배포	각종방문	광고기고	집단지지	후원회결성	회유압력	강사초청	강사출강	교회재정	당선무효	후보취소	후보제한	처벌유무
고신	○	○	○	○	○	○	○	○	○	○	○	○	X	○	○	○	X
통합	○	○	○	○	○	○	○	○	X	X	○	○	X	X	X	X	X
합동	○	X	X	X	X	X	X	X	X	○	X	X	X	X	○	○	X
기감	○	○	○	○	○	X	○	○	X	X	X	X	○	○	○	○	X
기성	○	○	○	○	○	○	X	X	X	X	○	○	○	○	○	X	○

* 이 비교표는 2012년 8월 기준입니다.

교단 및 교계에 만연한 금권선거 풍토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교단선거법 자체의 대폭적인 보완 및 개정이 선행되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이하 기윤실)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를 각 교단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나가고자 합니다.

◎ 운동 방향

1.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 구성

교단 전문가, 법률 전문가, 기윤실 담당자 등으로 이뤄진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및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사회선거법과 비교하여 부족한 내용을 책임연구를 맡고, 목회자 등 교단전문가가 교단 상황과 비교하여 연구결과가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며, 연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윤실 담당자가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윤실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구분	이름	소속
위원장	김고광	대한기독교감리회 수표교교회 원로목사
부위원장	조성돈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
책임연구위원	이상민	기독교법률가회 사회위원장, 법무법인 소명 변호사
검토위원	김기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정읍성광교회 담임목사
검토위원	김길홍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반포교회 담임목사
검토위원	조제호	기윤실 사무처장
간사	박제민	기윤실 간사

2. 교단선거법 개정안 개발

교단선거법이 실제 금권선거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되 교계정서와 동떨어지지 않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와 위반 시의 조치, 총회 임원선거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들어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의 개정안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활동내역

- 2012/05/23(수) 12시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1차 회의(용산역)
- 2012/06/19(화) 10시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2차 회의(용산역)
- 2012/07/06(금) 16시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기자간담회 및 3차 회의(연동교회 다사랑홀)
- 2012/08/09(목) 14시 :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 2012/09/10(월) : 각 교단에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한 개정안> 우편전달
- 2013/03/13(수) 12시 : 교단선거법 개정운동 4차 회의(용산역)
- **2013년 3월 : 각 교단 노회(지방회)에 교단선거법 개정안 제안**
- **향후 각 교단 선거관리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예정**

교단선거법 개정안

각 교단 총회 임원 선거의 공정화 방안 검토

-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및 위반 시의 조치 등을 중심으로 -

I.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아래에서 열거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는 공직선거법 및 각 교단 선거조례를 참고로 한 것임.

안)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조와 같이 선거운동을 규제한다.**01)**

1. 기부행위 및 매수 금지 : (1) 누구든지 자신이 당선될 목적,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하 이 항에서 "당선 등의 목적"이라고 총칭함)으로, 총회 대의원, 총회 대의원과 직접 관련된 교회·기관·단체·시설, 또는 총회 대의원들의 모임·행사(동창회, 수련회, 체육대회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이하 "매수행위"라 함)해서는 아니된다.**02)**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총회 임원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 이 후부터 총회 임원 선거일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선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03)**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범위(금액, 사회 관행, 관련자들의 관계, 제공받는 단체 등의 사정, 해당 지급 이전에도 장기간 지급한 사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를 벗어나지 않는 자선행위, 구호행위, 축의금 및 부의금 지급은 허용한다. 다만, 총회 임원 선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는 이와 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한다.**04)**

(3)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는 아니된다.**05)**

(4) 누구든지 자신이 당선될 목적,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할

01) 예장통합은 기존에 불법운동으로 규정하던 선거와 관련된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의 광고, 집단지지결의 이외에 추가로 △선거와 관련된 연설 △상대 후보 사퇴를 위한 매수(회유 압력) 등을 불법운동으로 보고 규제하기로 함. 예장합동도 제26조에 모두 포함되어 있던 규제 규정을 △사전 선거운동 금지 △후보 등록 취소 △선거 규정 위반자 처벌 △당선 무효 및 보선 등 네 가지로 나눠 구체적으로 보완함.

02)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230조 제1항 제1호 참조. 총회 대의원 등에 대한 기부행위 및 금품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

03) '당선 등의 목적'이 있는지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취지.

04) 예장통합은 기부행위를 불법운동으로 보고 금지하나 단서조항으로 총회 결의에 의한 특별모금이나 평소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기로 함.

05)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참조. 총회 대의원이 금품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총회 대의원에 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해서는 아니된다.**06)**

2. 후보자 매수 금지 : (1)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 또는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매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매수행위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해서는 아니된다.**07)**

3. 선거의 자유 방해 금지 : 누구든지 총회 대의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해서는 아니된다.**08)**

4. 허위사실공표 금지 : 누구든지 자신이 당선될 목적,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할 목적,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된다.**09)**

5. 방송 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10)**

6. 답례 금지 : 후보자는 당선된 데 대하여 총회 대의원에게 축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인당 합계 2만원 이내의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되, 그 총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11)**

7. 광고 등 금지 :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광고할 수 없고,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인터뷰에 출연할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에는 신문·잡지 기타 매체에 칼럼 기타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글을 기고할 수 없다. 후보자가 속한 교회는 선거기간 중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를 할 수 없고, 후보자가 속한 교회가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한 것으로

06)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참조
돈봉투 운반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취지.

0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참조
후보자의 사퇴 등을 유도하기 위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취지.

08)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참조

0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 참조.

10)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 참조.

11) 공직선거법 제118조 참조
예장통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지역별로 '총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하고 공개적으로 정건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뿐 아니라 지역 총대들에게 식사와 교통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로 본다.**12)** 다만, 후보자가 속한 교회가 선거기간 중에 교계 신문에 교회 절기에 따른 축하 광고를 3단 광고 이내의 크기로 1회에 한하여 게재하는 것은 허용하되, 선거일 전 1주일 부터 선거일까지는 이와 같은 광고도 할 수 없다.

8. 교회 등 개별 방문 금지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각 교회, 노회(연회, 지방회)를 개별 방문할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문자 메시지·이메일·전화·편지 등에 의한 선거운동은 허용된다.**13)**

9. 집단적인 의사 표명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서명·광고 기타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10. 강사 초빙 등의 제한: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 임원 선거일 [1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시무 교회를 제외한 교단 소속 교회, 노회(연회, 지방회), 총회 및 교단 소속 기관·단체의 예배, 행사에서 강사 기타 순서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 기간 중에는 시무교회의 정기적인 예배에 교단 소속 목사 및 장로를 강사로 초빙해서는 아니되고, 정기적인 예배 이외의 예배, 기타 행사에 초빙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 공직선거법 제93조 참조

13) 공직선거법 제106조 참조

예장통합의 경우, 선거 당사자나 지지자들의 지역 방문을 금하고 전화방문만 가능하던 '각종 방문' 조항이 삭제돼 오히려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

II. 선거운동 규제 위반시의 조치

1. 권징사유로 명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권징절차를 거쳐 징계하고, 일정한 정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우선 선거운동 규제 위반행위(선거조례 위반행위)를 권징사유로 각 교단 헌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2. 고발 및 기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인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위반 행위

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고소, 고발된 사건에 관하여 기소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일 경우, 14) 총회 임원 선거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구조를 채택할 것인지가 문제됨. 총회 임원 선거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구조를 택할 경우 선거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기소위원회가 부당하게 불기소처분할 수도 있음.

따라서, 총회 임원 선거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총회 임원 선거사건의 경우에는 선관위가 직접 기소하도록 하거나 또는 선관위가 고발할 경우 기소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기소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접수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접수 또는 인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위반 행위를 총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1주 내에 해당 위반 행위를 고발하여야 한다. 총회 기소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회 선거사건에 관한 고발을 접수한 경우에는 1주 내에 기소장을 총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접수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접수 또는 인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위반 행위에 관하여 총회재판국에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1주 내에 기소장을 총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기소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총회 재판국의 판결

총회 임원 선거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총회 재판국 관할(단심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소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15)

안) 총회 재판국은 총회 임원 선거에 관하여 기소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14) 예컨대 예장 통합 권징 조례 제59조

15)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에 관한 재판의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동법 제270조).

4. 당선 무효 및 당선 무효시의 대책¹⁶⁾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동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함(동법 제264조).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해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당선인이 선거조례 위반으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일부 교단 권징조례에서는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¹⁷⁾ 이 규정은 선거운동 규제 위반 행위로 인한 당선무효소송에 관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임.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이외에 별도로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등록무효, 피선거권상실 등의 사유로 당선무효를 청구)을 정하고 있는데(동법 제222조, 제223조), 위 권징조례 조항은 공직선거법의 위 규정에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부총회장이 1년 뒤에 총회장을 자동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부총회장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 총회장직 자동 승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그 경우에는 총회장이 1년 더 총회장 직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또는 부총회장 선거의 차점자가 총회장 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1) 총회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선거조례 위반 행위로 시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한다.

(2) 당선인이 그 임기 종료 후 상위 직을 자동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그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자동승계대상인 상위직의 기존보유자가 계속하여 그 직을 유지한다(2안: 당선 무효자가 선출된 선거의 차점자가 해당 상위 직을 승계한다).

5. 피선거권의 제한

공직선거법은 동법 중 일정한 조항 위반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원 등 일정한 공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동법 제266조 제1항).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조례 위반으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16) 예장합동 선거법개정위는 "당선 확정 후 30일 내 총회 임원회에서 당선 무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임원회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올렸으나 부결됨.

17) 예컨대 예장통합 권징조례 제168조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 총회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총회 및 노회(연회, 지방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할 필요가 있음.**18)**

안)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조례 위반으로 시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총회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총회대의원 및 노회(연회, 지방회) 대의원이 될 수 없다.

6.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

금권 선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는 선거조례 위반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을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과 동일하게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공직선거법처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액수의 제재금**19)**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20)** 제재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는 제재금을 미납할 경우 총회 대의원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안) (1)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조례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향응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음식물 기타 향응의 가액의 5배 이상 2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제재금을 부과하여야 하되, 그 상한은 1천만 원으로 한다.**21)**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음식물 기타 향응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제재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제재금을 납부할 때까지 총회 대의원이 될 수 없고 총회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8) 비슷한 취지의 피선거권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로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기성”)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제7항 사호가 있음.

예장합동은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수수자는 10년간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기로 결의함.

19) 공직선거법의 과태료에 상응하는 용어로 제재금이라는 용어를 도입.

20) 기성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제7항 나호는 금품 등을 받은 자에 대해 받은 금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추징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1)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6항. 예장합동은 금품수수자는 30배 벌금을 총회에 배상하도록 결의함.

Ⅲ 총회 임원 선거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1. 선거비용의 개인 부담 원칙

후보자가 교회, 노회(연회, 지방회)의 재정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음.

안)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비 및 선거운동 비용을 전액 후보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소속 교회 및 노회(연회, 지방회)의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²²⁾ 다만, 후보자 등록비의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교회 및 노회(연회, 지방회)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22) 기성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제5항 다호(5) 참조

2.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보장 방안

선거관리위원회가 금권선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선거조례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 기소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외부 인사 등이 선거관리위원 중 다수를 차지하도록 규정.

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2/3[또는 과반수]은 총회 대의원이 아닌 목사, 장로와 본 교단 이외 교단 소속의 목사, 장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의 비밀 보장

선거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함.

안) (1) 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선거조례 위반행위를 인지하기 전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²³⁾ 포상금의 지급액수는 선거조례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조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23)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 제1항 참조

교단선거법 개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조성돈 교수 | 실천신대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1. 감리교 사태를 통해 본 선거

감리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4년 전 감독회장 선거에서 파행을 시작하더니 4년이 지나는 동안 해결을 하지 못했다. 감리교를 대표해야 하는 감독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었고, 그 이후에 편이 갈리어서 서로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끝이 없이 이어졌다. 결국 이 문제는 사회법정으로 옮겨졌고 그 문제의 판결이 법원에서 재판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잘 알다시피 결국 법원이 임명한 임시감독회장이 선출되어, 목사가 아닌 평신도가 변호사의 자격으로 임시로나마 감리교단을 이끄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정상화가 되는 듯 하더니 다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오늘날까지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새로운 고소고발만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는 것은 결국 선거법에 관한 것이다. 감리교의 선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결코 그 법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정해진 법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 실행,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정해진 바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명확하지 않은 것 또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불법이 나타나고 '관행'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먼저는 한국사회의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인정에 이끌리고, 관계에 매이는 한국사람들 특유의 습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여도 사람의 관계를 깨트려 가면서까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 또한 한국사람들은 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모자란 것 같다. 사람들이 법을 엮어매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불편하다면 불법, 편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히려 인간적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법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믿는 이들끼리 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옳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서 법을 말한다는 것은 관계를 깨겠다는 의도로 생각이 든다. 특히 주 안에 우리는 하나인데 법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하고, 불애(不愛)한 일이 된다. 이것은 한국사람들이 정에 따라서, 인정에 이끌리어,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따라서 법을 넘어서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 같다. 또한 한국교회에서는 율법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있다. 은혜와 자유의 사상을 따라서 규칙을 정하고, 법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아마 여기에는 믿는 사람들에 믿음이 있을 것이다. 함께 믿는 이들은 도덕적으로 더 완벽하고, 교인들 간의 관계는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을 믿기

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을 안 해 본 것 같다.

그러나 결과는 교회에서, 그것이 개 교회가던지, 교단이던지, 연합기관이던지 비슷한 상황인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법정으로 나아가고, 재판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리어져 법적인 해결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교인들간의 믿음과 도덕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법으로는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그 실행 자체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교회의 문제가 사회법정에 판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2. 총회가 난맥상

교계의 선거가 치러질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 후보가, 또는 그 당선자가 얼마의 돈을 썼다는 이야기이다. 전에는 총회장을 뽑는 총회의 선거에서나 그러한 돈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이제는 노회뿐만 아니라 교계의 연합기관에서도 관행화되고 만 것 같다. 총회의 자리에 참여하는 목사나 장로들이야 그래도 신앙이 성숙되어 있고, 그 신앙에 굳은살이라도 배겨있으니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직도 목사는 인간 이상인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목사의 대표라는 분들이 돈을 써서 그 자리를 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얼마나 큰 충격이겠는가?

그래도 총회장, 노회장, 연합기관의 대표라고 한다면 일반 성도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요, 존중해 드려야 할 신앙의 어르신들이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인 면에서 훌륭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존경받는 자리에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전투구의 싸움을 벌이고, 불법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여서 표를 샀다면 그 소리를 들어야하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큰 실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더 나아가 안 그래도 개신교의 문제만 불거지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안티기독교나 기독교에 대해 냉소적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이러한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렇지'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손가락질과 거친 이야기들이 오고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들의 욕심과 불법이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든 것이다.

3.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겔5:6)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규례, 즉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질책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옳아야 할 이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소한의 제한만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조차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에서도 선거하면 고무신과 막걸리가 생각나던 때가 있었다. 그 이후에도 누구 이름이 들어간 시계나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이야기들도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그러한 관행들은 사라졌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50배가 된 것이다. 밥을 한 번 얻어먹어도, 기부금이나 선물을 받아도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한 것이다. 물론 초기에는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심지어는 법저항이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엄격하게 법을 적용했고, 실제적으로 법에 저촉되어 50배를 물어내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자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일들이 사라졌다. 가볍게 생각하고 모임에 후보자 불러서 밥 얻어먹는 일들조차도 다 사라지고 말았다. 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나가자 그간의 불법함들이 일시에 다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았다. 아직도 불법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여러 편법이 발달하여 불법이 더욱 교묘해지지만 한다. 아니 이제는 뻔뻔하기까지 하다. 여기저기서 금권선거가 폭로되어지고, 심지어 양심선언도 잇따르고 있는데도 '그래서 어찌라고'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나만 하는 일도 아니고, 다만 내가 더 썼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하는 항변만 나오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그 직책을 내려놓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4. 법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더 이상 인정에 기대고 신앙의 양심에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총회장의 자리가 이미 존경과 존중의 가치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들의 인품에 기댈 수도 없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단헌법에서 선거법(선거관리규정, 선거조례 등)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다. 그간 두루뭉술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법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의 기준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면의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는 무엇이 위법인가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교회 선거이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있다. 지역이나 선거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교회에 강사로 부르거나 자신이 관여되어 있는 단체에 부르는 것, 또는 단체에서 입후보자들을 불러 설교를 시키고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인정에 끌리어 사람들을 만나며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라든가, 기념품이라는 이름으로 돌리는 선물 등도 불법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없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사회가 바뀌면서 그 양태가 항상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그 변화의 형태도 모두 포함하여 밝혀야 한다. 그래야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를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불법이 적발되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간 총회나 다른 선거에서 불법이 적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처리과정에서 항상 유야무야되었다. 총회 임원들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기간, 심사하는 기간 등을 거치다보면 이미 임기가 지나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리고 목사가 목사를 치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서로를 봐 주다 보니 명확한 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군다나 그 불법을 명확히 밝혀내는 데에 있어서도 조사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을 개정한다면 그 조사기간이나 재판과정의 기간을 명시해야한다. 그냥 임원의 임기 동안 유아무야 넘어가던 관행을 끊어야한다.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 어떠한 벌칙이 가해지는 지를 명확히 해서 괜한 논란을 벗어나야 한다. 이번 조사에 보면 몇몇 교단의 경우는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는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어기면 어떠한 제재나 치리를 받게 되는지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 바로 잡아야 한다.

5. 나아가며

초대교회의 감독들은 자기가 그 자리를 얻고자 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의해서 추대가 되는 것이지 결코 그 자리를 탐하여 운동을 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공식적인 선포나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이다. 즉 감독이 된다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하겠다는 표시였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감독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되기 시작한다. 그 때부터 귀족들에 의해서 그 자리는 꼭 차지하고 싶은 자리가 되고 만다. 그러나 그 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고 만다. 권력이 있고, 돈이 모이는 그 자리로부터 기독교는 썩어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국교회사에 보면 과거에는 총회장을 여러 차례 하신 분들이 있다. 이러한 분들의 특징은 교계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분들이었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돈을 쓰고, 불법을 저질러서 그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이 모여서 그 자리로 올려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 총회장의 자리가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여 꼭 한 번 해 보고 싶은 자리가 되고 말았다. 서로 경쟁이 되고 싸움이 되었다. 그래서 꼭 이겨야 되는 선거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불법도 나타나고, 선거라는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오고, 경쟁에 의해서 과열되어지는 일들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정치력이 있고, 선거운동을 잘 하고, 배경이 되는 교회가 큰 분들이 총회장이 되었다. 이제 이 자리는 존경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자리가 된 것이다.

선거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된 현실에서 가장 최선을 찾는 길이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어길 때는 어떻게 명확하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을 교단에서 그대로 적용해 나갈 것은 아니다. 기윤실에서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과 기준이 있다는 것을 각 교단에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받아서 각 교단에서 교단헌법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총대들이나 교인들이 이러한 법을 통한 정화를 요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끗해진 총회와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본 글은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교단선거법 개정 필요하다

이 상 민 변호사 | 법무법인 소명, 기윤실 교단선거법개정위원회 책임연구위원

선거의 계절이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어 오는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예전에는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는 말이 있었다. 금권선거를 비꼬는 말이다. 요즘에도 금품 살포로 고발되거나 기소되는 후보자가 없지 않으므로, 금권선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이 강화되고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면서 예전에 비해 금권선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런데 오는 9월 주요 교단 총회를 앞둔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도 금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선거가 끝나면 누가 총회 임원 선거에서 얼마를 썼다느니 하는 말이 떠돌기도 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선거의 깨끗함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교단 선거조례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금권선거를 해결하기 위해 교단 선거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사전 작업으로 일부 교단 선거조례의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았다고 한다. 그 결과, 관련 규정이 대단히 미흡하고 모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로 하여 각 교단의 선거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금권선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총회 대의원 매수행위, 후보자 매수행위, 총회 선거가 있는 해의 기부행위, 과도한 답례 행위 등을 금지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어떤 경우가 금권선거에 해당하는지를 공직선거법 수준으로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선거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선거운동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과 함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은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강력한 제재이다.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하게 정해둔다고 하더라도, 위반 행위에 대하여 솜방망이 제재만 하게 된다면 규제가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금권선거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각 교단 헌법 등에 규정하고, 그 제재를 실제로 시행할 때에만 금권선거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일반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 대해 받은 물품, 음식물 등의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공직선거법에 도입되고, 실제로 그러한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물품, 음식물 등을 수수하는 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교단 선거와 관련해서도 금품 수수 등 선거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 무거운 제재를 가하도록 교단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총회 선거 부정 사건은 총회 재판국 관할로 하고, 총회 재판국에서는 기소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총회장, 부총회장 등의 경우 임기가 통상 1년이므로 판결 선고가 늦어지면 제재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선된 임원이라고 할지라도 금권선거 등으로 인해 일정한 정도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아예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고, 나아가 향후 일정 기간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단지 법조문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법 개정 이후에는 해당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일반 사회 선거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당선되지만 하면 끝'이라는 인식은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불법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는 바람에 재선거를 치르는 일이 전혀 낫설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한국교회 교단 선거에서 불법선거, 금권선거 때문에 선거를 다시 한 경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어느 선거이든 금권선거가 문제되어 선거를 다시 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금권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일이 더 이상은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교단 선거법 개정 운동을 통해 금권선거가 한국교회에서 뿌리 뽑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본 글은 2012년 7월 기독교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cemk.org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1987년 창립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윤실 운동은 정부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사장 : 홍정길(남서울은혜교회 원로목사) ▲공동대표 : 백종국(상임,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은조(분당샘물교회 담임목사),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전재중(법무법인 소명 대표변호사)

▲후원문의 : 02-794-6200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후원약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 02-794-6200 Fax: 02-790-8585

▲E-mail : cemk@hanmail.net ▲트위터, 페이스북 : @gjyunsil ▲www.cemk.org



* 기윤실 소개영상 보기